

‘정부 보조금 부정수급’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

- 기 간 : 2018. 5. 1. ~ 7. 31.
- 신고대상 :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

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

- ① 일자리 창출분야(고용·노동) 보조금 부정수급
- ② 연구개발(R&D)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
- ③ 복지분야 (요양급여, 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) 보조금 부정수급
- ④ 농·축·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
- ⑤ 기타분야(여성가족·중소기업지원·환경·해양수산 등) 보조금 부정수급

- 신고안내 :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
- 신고방법
 - 인터넷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(www.acrc.go.kr)
 - 방문·우편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(동관) 1층 「부정부패신고센터」
 - 팩 스 : (044) 200-7972
 - 스마트폰 앱 : 국민권익위원회 “부패·공익신고” 앱
- 신고요령
 -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·이유,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
- 신고처리 절차
 - 신고사실 확인 후, 수사기관(검찰, 경찰)·감사원·감독기관 이첩·송부
- 신고자 보상 및 포상
 - 보상 :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
 - 포상 :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